

稅務調整을 통한 法人稅柔軟化에 관한 研究

郭 守 根* · 辛 承 卯**

《目 次》

I. 序 言	4. 變數의 測定
II. 實證研究의 理論的 背景 및 既存	5. 標本企業의 選定
研究의 檢討	IV. 實證分析結果
1. 法人稅柔軟化의 意義 및 動機	1. 세무조정시의 주된 고려사항에 대한 檢증결과
2. 法人稅柔軟化의 手段	2. 법인세유연화을 위한 세무조정 수단의 사용 현황에 대한 檢증결과
3. 法人稅柔軟化에 관한 既存研究	3.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유연화의 차이에 대한 檢증결과
III. 實證研究의 設計	V. 結 論
1. 法人稅柔軟化와 利益柔軟化의 相互關係	
2. 研究假說의 設定	
3. 研究方法	

I. 序 論

법인세는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종으로서 이는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기와 비교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할 경우 세무조사나 세금의 증액납부 요구와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과세권자인 정부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위에 있음으로써 정부의 이러한 압력을 기업이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비록 법인세의 최소화를 포기하더라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증액납부함에 따른 富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길을 선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짐과 동시에 안정적인 법인세 납부를 통하여 세무조사 등에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인세로 인한 기업가치 감소의 총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세 납부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法人稅柔軟化라고 한다.

기업이 법인세를 유연화하기 위하여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는 法人稅差減前純利益을 유연화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익을 유연화하는 것이 곧 법인세를 유연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Hepworth(1953)는 이익유연화의 동기중 하나로서 법인세유연화를 들었으며, 이 아래로 이익유연화의 후속 결과로서 법인세유연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뿐만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課稅標準을 구하기까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각종 세무조정항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같은 세무조정 항목이 최종적인 법인세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 양자간에는 일반적으로 相衝關係(trade-off relationship)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익을 유연화한 결과로서 야기되는 법인세유연화와는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이 법인세 자체를 유연화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유연화에 대하여는 최근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가지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세무조정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당기순이익 금액과 법인세 금액 자체의 변동성을 살펴보거나, 또는 세무조정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준비금이나 특별상각과 같은 한정된 몇 가지의 사항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부의 기존연구들은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반드시 서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들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과 이에 따른 실증분석을 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유연화를 시도하리라는 추론 하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에 대응한 기업의 세무조정행위가 이러한 법인세유연화 가설과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이고, 일반적인 경우 기업들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차감후의 최종적인 당기순이익 보다는 법인세를 유연화하고자 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구체적인 세무조정항목으로서 준비금제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들고 기업이 이들을 활용하는 실태가 법인세유연화 가설과 일관되는지 알아본다.

셋째, 법인세를 유연화하는 행위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정도, 기업규모 및 부채비율과 같은 기업특성변수에 따라서 기업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II. 實證研究의 理論的 背景 및 既存 研究의 檢討

1. 法人稅柔軟化의 意義 및 動機

법인세유연화의 의의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하였을 때는 가능한 한 법인세를 적게 산출하도록 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하였을 때는 가능한 한 법인세를 많게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변동하는 정도에 비하여 법인세가 변동하는 정도를 작게 하려는 경영자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경영자가 법인세를 유연화하고자 하는 동기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多期間에 걸친 법인세 총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데 법인세유연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종이므로 경영자는 가능한 한 법인세부담액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세법 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한정되어 있고 당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기 이전의 기납부법인세에 대한 환급제도(carry-back provisions)가 없는 경우에는 매기의 법인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다기간에 걸친 법인세 총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둘째,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최소화를 회생하면서도 법인세유연화를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 즉 다소간 법인세를 더 내더라도 매기의 법인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전기와 비교하여 당기의 법인세가 증가할 경우와 감소할 경우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세무당국이 안정적인 稅收確保를 선호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전기와 비교하여 당기에 법인세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지만 감소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실시나 증액납부요청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무당국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稅收目標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바, 이로 인하여 각 기업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지를 검토하기 보

다는 각 기업별로 세금납부 기대액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대액을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의 세무행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다기간에 걸친 법인세 총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데 다소 역행하더라도 법인세 납부액이 전기에 비하여 심하게 변동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액이 전기와 비슷하거나 또는 전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2. 法人稅柔軟化의 手段

법인세를 유연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현행 세법상의 법인세 결정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가 하는 총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광의의 법인세에는 관련소득의 유형별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3가지가 있다. 이들 중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하여는 세법상 그 계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유연화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정하기로 하고, 이의 산출구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산출구조를 통해서 최종적인 법인세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 법인세를 유연화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과 같은 세무조정사항이 법인세 결정세액에 영향을 준다.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발생주의 회계에 의하여 측정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로 인한 각종의 조정 항목을 가감함으로써 구해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유연화하고 이

〈표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의 산출구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익금산입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 손금산입항목 · 익금불산입항목 =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과세표준 ×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법인세 결정세액

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유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기업이 이익을 유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국내외의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과 같은 세무조정사항들 중에서는 기업이 그 사용여부와 그 금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를 유연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준비금제도의 이용을 들 수 있다.

둘째, 増資所得控除와 같은 일부의 소득공제 항목도 법인세유연화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소득공제를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소득공제에 대한 세법 상의 한도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도 법인세유연화에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은 투자의 시기와 금액을 조절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3. 法人稅柔軟化에 관한 既存 研究

이익유연화의 결과로서의 법인세유연화가 아닌 법인세 자체의 유연화에 관한 기준의 연구는 이익유연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던 미국에서는 거의 없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우리 나라와는 달라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충실한데다가 이연법인세제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법 상 결정된 법인세 납부액과는 별도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할 법인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나므로, 이익유연화가 곧 법인세유연화라고 인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무당국이 안정적인 조세채권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 동안 이연법인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¹⁾ 기업으로서는 법인세 자체를 유연화하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현기(1993)는 법인세유연화의 수단으로서 법인세의 직접감면제도(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와 간접감면제도(준비금·특별상각)를 들고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나타났을 유연화 이전의 법인세를 추정하고 손익계산서 상에 보고된 법인세는 이미 유연화된 법인세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유연화 이전 법인세에 대한 시계열적 추세선의 변동성이 유연화 이후 법인세에 대한 시계열적 추세선의 변동성보다 클 경우에 기업이 법인

(1)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998년부터는 이연법인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세를 유연화한다고 보고 법인세유연화 현상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업들은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유연화하며 유연화 수단들 중에서 금액적으로 가장 큰 것은 특별상각이고 이용 빈도상 가장 큰 것은 준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법인세유연화 정도가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정규언(1993)은 1982년부터 1989년 사이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의 변동계수를 상호비교한 결과 법인세의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는 기업이 세무조정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유연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용호(1995)는 Moses(1987)가 이익유연화 측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법인세유연화 측정치와 이익유연화 측정치를 기업별로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이용하여 법인세유연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준비금을 이용하여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연화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유연화를 위하여 이익유연화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준비금과 관련해서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상호독립적이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법인세유연화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도 보이고 있다.

전춘옥·조현윤·백승산(1996)은 준비금과 특별상각을 사용하여 기업들이 법인세를 유연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시간추세모형과 random walk with drift 모형을 이용하여 유연화 이전 법인세와 유연화 이후 법인세의 시계열적 추세선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법인세유연화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인세를 유연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동일한 방법으로 이익유연화 비율도 측정함으로써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기업규모와 부채비율에 따라 기업별로 법인세유연화 정도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업들은 준비금과 특별상각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유연화하며 이익유연화와 법인세유연화는 별개의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를 유연화하는 정도가 커진다고 결론짓고 있다.

III. 實證研究의 設計

본 논문은 그 동안의 연구들이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상충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기업들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의 주된 고려사항은 이익유연화라기 보다는 법인세유연화라는 것을 실증해 보이고자 한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세무조정항목을 사용하는 양상이 이러한 법인세유연화 현상과 일관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기업의 특성별로 법인세유연화 행위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의 상호관계를 분석적으로 고찰한 후 연구가설, 연구방법, 변수의 측정 및 표본기업의 선정을 제시하였다.

1. 法人稅柔軟化와 利益柔軟化의 相互關係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를 법인세와 이익 각각의 기간별 분산을 작게 하려는 경영자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법인세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의 세무조정항목을 일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분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중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이들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영향받는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영향을 야기하는 과세표준 조정액 단위로 환산하기로 한다. 예컨대 세액공제 300원이 있었고 세율이 30%라면 이러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300/0.3 = 1,000$ 원만큼 감소시킨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환산하기로 한다. 이처럼 환산된 모든 세무조정항목을 ADJ라고 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EBT라 하며 세율을 t라고 하면 각 연도의 법인세(TAX)와 법인세차감후의 당기순이익(NI)은 다음과 같이 된다.

$$\text{TAX} = (\text{EBT} - \text{ADJ}) * t \quad (1)$$

$$\text{NI} = \text{EBT} - \text{TAX} = \text{EBT}(1 - t) + \text{ADJ} * t \quad (2)$$

여기서 법인세의 분산과 당기순이익의 분산을 각각 VAR(TAX)와 VAR(NI)라고 하면

$$\begin{aligned} \text{VAR}(\text{TAX}) &= t^2 \text{VAR}(\text{EBT}) + t^2 \text{VAR}(\text{ADJ}) \\ &\quad - 2t^2 \text{Cov}(\text{EBT}, \text{ADJ}) \end{aligned} \quad (3)$$

$$\begin{aligned} \text{VAR}(\text{NI}) &= (1-t)^2 \text{VAR}(\text{EBT}) + t^2 \text{VAR}(\text{ADJ}) \\ &\quad + 2t(1 - t) \text{Cov}(\text{EBT}, \text{ADJ}) \end{aligned} \quad (4)$$

위의 식 (3)과 (4)를 보면 $\text{VAR}(\text{EBT})$ 가 작을수록 법인세와 당기순이익의 분산 모두가 더 작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유연화할수록 법인세와 당기순이익 모두가 유연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하여 그 동안의 이익유연화에 대한 연구에서

는 이익유연화의 주된 동기로서 법인세유연화를 들었고, 이 결과 이익유연화의 후속결과로 법인세유연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ov(EBT, ADJ)의 경우에는 이것이 VAR(TAX)와 VAR(NI)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Cov(EBT, ADJ)가 클수록 법인세의 분산은 작아지는 반면 당기순이익의 분산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Cov(EBT, ADJ)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세무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서로 相衝關係(trade-off relationship)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까지는 이익유연화가 곧 법인세유연화를 가져다 주므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법인세유연화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부터 법인세를 결정하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기까지 행해지는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이익유연화와 법인세유연화가 상충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와 당기순이익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유연화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기업이 행하는 세무조정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研究假說의 設定

1) 세무조정시의 주된 고려사항(법인세유연화 대 이익유연화)에 대한 가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상충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 중에서 어느 것에 치중하는가 하는 것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유연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익유연화의 주된 동기로서 법인세유연화를 들고 있는 점과 법인세는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는 항목이고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세무당국을 의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일반적인 경우 이익유연화라기 보다는 법인세유연화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검증해 보아야 할 사항인 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기업들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2) 법인세유연화를 위한 세무조정 수단의 사용 현황에 대한 가설

앞에서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

연화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하여는 기업들이 법인세 유연화를 위하여 세무조정 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들의 실제 사용 양상이 법인세유연화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간접감면제도 중에서 준비금 제도를 선택하고⁽²⁾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이들이 각각 법인세유연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1: 기업들은 준비금 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2: 기업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3)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유연화의 차이에 대한 가설

일반적으로 세무조정 시 고려하는 주된 사항이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연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모든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모든 기업이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유연화를 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업에 따라서는 이익유연화가 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에 있어서 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도록 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추론하고 이로부터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 정도에 대한 가설

기업들이 법인세를 유연화하는 주된 이유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기간별로 변동함에 따른 법인세 결정세액의 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기에 대비하여 많이 변화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다지 변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전기대비 법인세의 변동이 클 것이므로 법인세를 유연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클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2) 간접감면제도에는 준비금제도 이외에 특별상각제도도 있으나 특별상각은 특별손실항목으로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자체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되므로 본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를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상각제도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연구가설 3-1: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 정도가 쿠수록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 성향이 크다.

(2) 기업 규모에 대한 가설

Watts와 Zimmerman(1986)이 제시한 실증적 회계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쿠수록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관심을 받는 정도가 크고, 따라서 높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 동안 실증적 회계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정치적 비용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회계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기업이 부담하는 정치적 비용 중에는 법인세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최성렬(1984)의 연구에 의하면 人的 및 物的 측면에서 세무당국에 대한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를 더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기보다는 법인세를 좀더 내는 편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일수록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대외에 알려질 경우 기업이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세금을 포탈하였을 것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거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어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정치적 비용의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볼 때 만약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정치적 비용이 다르게 되고, 또한 법인세를 유연화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 행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기업일수록 세무조사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될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인세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리란 추론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2: 기업규모가 쿠수록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 성향이 크다.

(3) 부채비율에 대한 가설

대리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부채를 사용할 경우 대리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대리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경영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에는 기대이익의 분산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채를 사용할 경우 경영자들은 당기순이익의 분산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즉, 당기순이익을 유연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법인세유연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법인세를 유연화하면 당기순이익도 유연화된다고 볼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유연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으나 앞에서 제시한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의 상호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상충관계에 있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의 논리와 대리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들은 당기순이익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크게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세무조정을 함께 있어 법인세유연화를 회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3: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 성향이 작다.

3. 研究方法

1) 세무조정 시의 주된 고려사항(법인세유연화 대 이익유연화)에 대한 검증

법인세를 유연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하면 세무조정 시 법인세 결정세액을 가급적 적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비율이⁽³⁾ 전기보다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하면 법인세 결정세액을 가급적 크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유효법인세율이 전기보다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하면 유효법인세율이 전기보다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하면 유효법인세율이 전기보다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표본기업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으로 양분하고 또한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으로 양분한 후에 2 * 2 분할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χ^2 검증을 함으로써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유연화한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유연화한 기업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은지를 알아본다. 즉, <표 2>와 같은 분할표에서 B가 A보다 크고 C가 D보다 큰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유의적인지를 검증한다.

(3) 이하 유효법인세율이라고 칭한다.

〈표 2〉 법인세유연화 대 이익유연화에 대한 검증을 위한 분할표

		유효법인세율		계
		증 가	감 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증 가	A	B	A + B
	감 소	C	D	C + D
계		A + C	B + D	A + B + C + D

2) 법인세유연화를 위한 세무조정수단의 사용현황에 대한 검증

준비금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유연화하는지 검증함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이용하는 빈도와 금액면에서 가장 큰 기술개발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이라는 3가지 준비금을 선정하였다.⁽⁴⁾ 이를 준비금을 설정할 때 기업은 그 금액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임의적립금의 일종으로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표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이러한 준비금을 계상한 기업들만을 따로 선정하여 이를 기업에 있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한 기간에는 준비금계상액이 증가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한 기간에는 준비금계상액이 감소하는지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2 분할표에 대한 χ^2 검증에 의하여 알아보았다.⁽⁵⁾

한편,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유연화하는지 검증함에 있어서는 세법상 이들중 대부분의 항목들에 있어서 이들로 인하여 공제 또는 감면된 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표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이익잉여금

(4) 이처럼 이들 3가지의 준비금이 전체 준비금들 중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 결과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자료에서도 이들 3가지 준비금에 대한 전입액 만이 각각 따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5) 이처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감소)하면 준비금계상액이 증가(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기업이 법인세유연화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금에 대한 세법 상의 손금인정 한도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비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기업들에 있어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세법 상 손금인정한도의 근사치를 구하고 이에 대비한 실제 기술개발준비금 계상액의 비율의 값들을 알아본 바 1991, 1992, 1993년 모두에서 평균값이 0.3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손금인정한도 이내에서 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기업들은 법인세유연화를 위하여 준비금계상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처분계산서 상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한 기업들만을 따로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 있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한 기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계상액이 증가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한 기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계상액이 감소하는지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2 분할표에 대한 χ^2 검증에 의하여 알아보았다.

3)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유연화의 차이에 대한 검증

기업특성에 따라 법인세를 유연화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Logit 분석모형을 이용하였다.

$$\text{SMOOTH}_t = a\text{CHEBT}_t + b\text{SIZE}_t + c\text{DETRATIO}_t$$

단. SMOOTH: 법인세유연화 여부의 측정치로서 1과 0의 값을 가지는 dummy변수

CHEBT: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정도

SIZE: 규모

DETRATIO: 부채비율

그리하여 추정된 모형에서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계수추정치가 예상한 부호를 보이는지 (즉, $a > 0$, $b > 0$ 이고 $c < 0$ 인지) 그리고 이를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지 알아봄과 아울러 이를 전체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4. 變數의 測定

현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 상의 전기손익수정 항목은 과세표준 계산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가감됨이 일반적이다.⁽⁶⁾ 또한 현재 공시되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은 세법상 확정된 당기의 최종 결정세액이 아니라 이에 대한 결산일 현재의 추정치이며, 이에 따라 이것과 세법상 확정된 결정세액과의 차액은 차기의 이익잉여금계산서 상에 법인세추납액 또는 법인세환급액이라는 일종의 전기 손익수정항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재상황에서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등만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비롯한 변수들을 측정하면 이들 변수가 법인세와 관련한 실질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등 및 유효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측

(6) 물론 전기손익수정이익 항목이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되었거나 전기손익수정손실 항목이 전기에 이미 손금에 산입되었다면 당기에 이들 전기손익수정 항목을 과세표준 계산시 가감하지 않지만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손익수정 항목은 보통 당기의 과세표준 계산시 가감되는 조정항목이 된다.

정하였다.

①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EBT_t = ISEBT_t + PRGAIN_t - PRLOSS_t^{(7)}$$

단, $ISEBT_t$ = 당기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PRGAIN_t$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법인세환급액

이외의 전기손익수정이익

$PRLOSS_t$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법인세추납액

이외의 전기손익수정손실

② 법인세동 :

$$TAX_t = ISTAX_t + ADDTAX_{t+1} - REFTAX_{t+1}^{(8)}$$

단, $ISTAX_t$ = 당기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동

$ADDTAX_{t+1}$ = 차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법인세추납액

$REFTAX_{t+1}$ = 차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법인세환급액

③ 유효법인세율 :

$$ETR_t = \frac{TAX_t}{EBT_t}$$

그리고 기타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④ 준비금 전입액 :

$$RESERVE_t = TECHNO_t + EXPORT_t + OVERSEA_t$$

단, $TECHNO_t$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기술개발준비금 계상액

$EXPORT_t$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수출손실준비금 계상액

$OVERSEA_t$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상액

⑤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입액 :

$$RATIONAL_t = \text{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계상액}$$

⑥ 법인세유연화 여부의 측정치 :

(7) 이와 같이 정의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이를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칭하기로 한다.

(8) 이와 같이 정의된 법인세동을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동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이를 조정후 법인세동으로 칭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text{SMOOTH}_t &= 1, (EBT_t - EBT_{t-1}) \times (ETR_t - ETR_{t-1}) \sim \leq \sim 0 \text{인 경우} \\ &= 0, (EBT_t - EBT_{t-1}) \times (ETR_t - ETR_{t-1}) \sim > \sim 0 \text{인 경우} \end{aligned}$$

⑦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성:

$$C\Delta EBT_t = \frac{|EBT_t - EBT_{t-1}|}{EBT_t}$$

⑧ 규모:

$$SIZE_t = \ln(ASSET_t) \text{ 단, } ASSET_t \text{는 } t\text{기말 대차대조표 상의 총자산}$$

⑨ 부채비율:

$$DETRATIO_t = \frac{DEBT_t}{ASSET_t} \text{ 단, } DEBT_t \text{는 } t\text{기말 대차대조표 상의 총부채}$$

5. 標本企業의 選定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1994년말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하였다.

- 1) 제조업에 속한 기업
- 2) 1990년 이전에 상장된 기업
- 3) 결산일이 12월 말인 기업
- 4)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조정후 법인세등이 계속적으로 양수인 기업
- 5) 본 연구에 필요한 연간 재무제표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

이상과 같은 표본기업 선정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은 금융업은 주된 세무조정항목이 제조업과 상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제조업에 비하여 적어서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나 이익유연화를 관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는 非上場大企業의 경우 상장기업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높은데,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기간중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기간별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유효법인세율의 변화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3)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법인세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기업별로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는 세법 상의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유효법인세율 측정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고 아울러 유효법인세율 측정시 분모가 음수가 됨으로써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경제적 해석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총 262개였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기간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개 연도로 하였다. 이는 1991년부터 방위세가 폐지되고 법정법인세율이 변함에 따라 주민세 등과 같은 법인세에 부가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할 경우 최고 법정법인세율이 1990년의 39.75%에서 1991년에는 36.55%로 변화하였는 바, 이러한 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3개 연도중에서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1992년과 1993년인 바, 이는 1991년은 1992년의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화와 유효법인세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연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기업수 × 연도의 총계는 $262 \times 2 = 524$ 개가 되었다.

IV. 實證分析結果

1. 세무조정 시의 주된 고려사항(법인세유연화 대 이익유연화)에 대한 검증결과

세무조정 시의 주된 고려사항이 법인세유연화인지 아니면 이익유연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이 증가/감소한 기업과 유효법인세율(ETR)이 증가/감소한 기업 사이의 분할표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EBT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ETR이 감소한 기업이 증가한 기업보다 더 많고, EBT가 감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ETR이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으며, 이러한 기업수의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화율보다 조정후 법인세등의 변화율이 작도록 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즉, 기업들은 세무조정 시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연화를 주된 고려사항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이 채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법인세유연화를 위한 세무조정수단의 사용 현황에 대한 검증결과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하면 준비금전입액이 증가하고, 반대로 조정후 법인

〈표 3〉 EBT의 증가/감소와 ETR의 증가/감소 사이의 분할표

		ETR		계
		증 가	감 소	
EBT	증 가	90	123	213
	감 소	167	144	311
	계	257	267	524

$\chi^2 = 6.625$ (p 값 = 0.010)

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하면 준비금전입액이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정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EBT)이 증가/감소한 기업과 준비금전입액(RESERVE)이 증가/감소한 기업 사이의 분할표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EBT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RESERVE가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고 EBT가 감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RESERVE가 감소한 기업이 증가한 기업보다 더 많으며, 이러한 기업수의 차이는 유의수준 0.000에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가능하면 줄이고자 준비금전입액을 증가시키며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가능하면 늘이고자 준비금전입액을 감소시킴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기업들은 세무조정 시 준비금을 법인세유연화의 수단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가설 2-1이 채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감소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이 증가/감소한 기업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입액(RATIONAL)이 증가/감소한 기업 사이의 분할표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EBT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RATIONAL이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고 EBT가 감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RATIONAL이 감소한 기업이 증가한 기업보다 더 많으며, 이러한 기업수의 차이는 유의수준 0.026에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액을 가능하면 줄이고자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증가시키며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

〈표 4〉 EBT의 증가/감소와 RESERVE의 증가/감소 사이의 분할표

		RESERVE		계
		증 가	감 소	
EBT	증 가	84	49	133
	감 소	64	130	194
계		148	179	327

$\chi^2 = 28.986$ (p값 = 0.000)

〈표 5〉 EBT의 증가/감소와 RATIONAL의 증가/감소 사이의 분할표

		RATIONAL		계
		증 가	감 소	
EBT	증 가	103	87	190
	감 소	123	158	281
계		226	245	471

$\chi^2 = 4.948$ (p값 = 0.026)

하면 법인세액을 가능하면 늘이고자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감소시킴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기업들은 세무조정시·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법인세유연화의 수단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가설2-2가 채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유연화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

1)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전체 524개 표본에 있어서 변수들의 간단한 기술통계와 이를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7〉에서 피설명변수인 SMOOTH와 이에 대한 각각의 설명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CHEBT와 DETRATIO의 경우에는 연구가설에서와 일관된 부호를 보여주고 또한 그에 대한 유의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SIZE의 경우에는 연구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반대로 음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유의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설명

〈표 6〉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 고
SMOOTH	0.5534	0.4976	0.0000	1.0000	dummy 변수(1.0)임
CHEBT	0.6766	1.8588	0.0004	25.6271	
SIZE	18.8082	1.3947	15.4538	23.7783	
DETRATIO	0.6195	0.1603	0.1072	0.9259	

〈표 7〉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

	SMOOTH	CHEBT	SIZE	DETRATIO
SMOOTH	1.000 (0.000)			
CHEBT	0.120 (0.006)	1.000 (0.000)		
SIZE	-0.034 (0.441)	-0.091 (0.037)	1.000 (0.000)	
DETRATIO	-0.069 (0.114)	-0.023 (0.60)	0.512 (0.0001)	1.000 (0.000)

주) 괄호 속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변수 SIZE와 DETRATIO 사이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고 그에 대한 유의수준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SIZE와 DETRATIO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음으로써 SMOOTH와 SIZE 사이의 단순상관계수가 SMOOTH와 DETRATIO 사이의 단순상관계수처럼 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Logit모형에 의한 검증결과

전체 524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의 수효와 종류를 달리하는 각각의 추정방법별로 Logit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추정치와 이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χ^2 값, 그리고 사용된 전체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모형의 χ^2 값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우선 모형의 χ^2 값을 살펴보면 모든 추정방법에서 1% 또는 5% 미만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모형의 식별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설명변수를 하나만으로 한 경우(즉, 추정방법1, 2 및 3의 경우)를 살펴보면, CHEBT와 SIZE에 대한 계수는 예상한 부호를 나타냈고 또한 각각 1%와 5% 미만에서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DETRATIO에 대한

〈표 8〉 Logit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의 χ^2 값(df)
	CHEBT	SIZE	DETRATIO	
추정방법1	0.328(9.51)***			17.240(1)***
추정방법2		0.011(5.66)***		5.689(1)**
추정방법3			0.270(3.89)	3.906(1)**
추정방법4	0.298(6.05)***	0.002(0.20)		17.437(2)***
추정방법5	0.327(6.75)***		0.003(0.00)	17.241(2)***
추정방법6		0.044(4.21)**	-0.983(2.47)*	8.188(2)**
추정방법7	0.299(5.92)***	0.035(2.59)*	-0.977(2.40)*	19.862(3)***

주 1) 각 설명변수에 있어서 팔호 속의 수치는 계수추정치에 대한 χ^2 값을 나타냄.

주 2) ***, ** 및 *는 각각 단측검정시 1%, 5% 및 10% 미만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주 3) 모형의 χ^2 값은 관련된 모든 설명변수들에 대한 계수가 0이라고 한 경우와 비교한 우도비검정 결과 산출된 것임.

주 4) ###와 ##는 각각 1%와 5% 미만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계수는 예상과 반대로 양수를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변수의 기술 통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SIZE와 DETRATIO 사이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으로써 설명변수를 하나만으로 할 경우 DETRATIO가 마치 SIZE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설명변수를 두 개로 한 경우(즉, 추정방법4, 5 및 6의 경우)에 대한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즉, CHEBT와 SIZE에 대한 계수는 모두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나 DETRATIO에 대한 계수는 SIZE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만 연구 가설에서 예상한 것과 일치하게 음의 부호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입한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모든 설명변수들을 함께 사용하여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도입된 3개의 설명변수 모두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설명변수들에 대한 계수가 연구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고 또한 이들은 각각 1% 또는 10% 미만에서 유의적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연구가설 3-1, 3-2 및 3-3 모두가 채택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 이익의 변동정도가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법인세를 유연화하는 성향이 커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V. 結 論

본 연구는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이익유연화와 법인세유연화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분석적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업들이 세무조정을 함께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익유연화 보다는 법인세유연화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법인세유연화를 하고 있다면 실제의 세무조정 행위가 이러한 법인세유연화와 일관되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법인세유연화를 함께 있어서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이익유연화보다는 법인세유연화를 주로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들은 준비금제도와 소득공제,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유연화한다. 셋째,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정도가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당기순이익보다는 법인세를 유연화하는 성향이 커진다.

본 연구는 법인세유연화에 대한 기존연구와 달리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유연화와 이익유연화가 상충관계에 있음을 설득력있게 분석하였고, 특정의 세무조정 항목만이 아니라 종체적인 세무조정금액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효법인세율 개념을 연구에 도입하였으며 법인세유연화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조정후 법인세등이 조사대상기간 5년전부터 조사대상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양수인 기업만을 표본으로 사용한 결과 경영성과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만이 연구대상으로 됨으로써 연구결과를 모든 기업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입수하기가 곤란한 결과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세무조정항목을 대변하는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고려한 세무조정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금액의 정확성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셋째, 조정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증감과 유효법인세율의 증감 사이의 관계로부터 기업의 법인세유연화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제로 법인세를 유연화하고자 한 기업을 정확히 분류하는 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상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입수하고 연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參 考 文 獻

- 원정연, “이의유연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1988), pp.169-204.
- 이용호, “법인세유연화 연구”, 회계학연구(1995), pp.25-57.
- 전춘옥 조현윤 백승산, “법인세유연화 연구”, 세무학연구(1996), pp.63-95.
- 정규언,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1993), pp.339-356.
- 주현기,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한 법인세평준화”, 세무학연구(1993), pp.277-298.
- 최성렬, “국민조세의식의 조사연구”, 연구토론집, 세무대학교 조세문제연구소, 1984.
- 황교선, “경영자의 기간이익 유연화경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1990), pp.63-87.
- Begley, J., “Debt Covenants and Accounting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90), pp.125-139.
- Daley, L.A. and R.L. Vigeland, “The Effect of Debt Covenants and Political Costs on the Choice of Accounting Methods : The Case of Accounting for R-D Cos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3), pp.195-211.
- Hagerman, R.L. and M.E. Zmijewski, “Some Economic Determinants of Accounting Policy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79), pp.141-161.
- Hepworth, S.R., “Smoothing Periodic Income”, *The Accounting Review*(1953), pp.32-39.
- Holthausen, R.W., “Accounting Method Choice: Opportunistic Behavior, Efficient Contracting and Information Perspectiv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90), pp.207-218.
- Moses, O.D., “Income Smoothing and Incentives: Empirical Test Using Accounting Changes”, *The Accounting Review*(1987), pp.358-377.
- Watts, R.L. and J.L. Zimmerman,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6.
- Zimmerman, J.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3), pp.119-149.